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진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629

발의연월일: 2024. 9. 4.

발 의 자:전진숙・이수진・서미화

임광현 • 박홍배 • 오세희

김 윤 • 박희승 • 주철현

강준현 • 이광희 • 최민희

양부남 • 채현일 • 조인철

송재봉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, 텔레그램, 다크웹 등과 같은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가 이러한 불법 영상물의 주요 유통 경로로 활용되고 있음. 특히 텔레그램의 경우 강력한 익명성 보장 및 암호화된 메시징 기능으로 인해 사용자 추적이 어려워 불법적인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및 유포에 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여 법적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(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4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.

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의2(허위영상물 등의 반포	제14조의2(허위영상물 등의 반포
등) ① ~ ③ (생 략)	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익명
	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
	이용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
	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
	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
	<u>다.</u>
<u>④</u> (생 략)	<u>⑤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